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26
----------	-----

2025. 6. 10.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5. 30. 윤석민 의원 등 9인

나. 상정의결

-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2025. 6. 10.)
“원안가결”

2. 제안이유(제안설명: 대표발의자 윤석민 의원)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자 회의록 공개 기한을 규정하여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공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정례회가 끝난 날부터 30일, 임시회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함
(안 제47조제7항 신설)

나.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영상회의록으로 임시회의록을 대체 함(안 제47조제8항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75조(회의의 공개 등)
「지방자치법」 제83조(회의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최서용)

가. 규칙개정 취지

○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회의록 공개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회의록의 신속한 공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윤석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 임.

나. 검토내용

- 지방의회의 회의 공개는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제도적 장치임.
-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는 2024년 7월 22일,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의결하고 전국 243개의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회의규칙 등의 개정을 권고한 바가 있음.
- 권익위의 개정 권고는 회의 방청, 회의록 공개, 의사 중계 부문에서 주민의 알권리 제고, 민주적 참여 활성화, 지방의회에 대한 주

민 통제력 강화를 위한 의사 공개 활성화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권익위에서는 각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1.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2. 회의록 공개기한을 규정하고, 3. 실시간중계 근거 신설 및 영상회의록 공개 대상 등을 포함한 운용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음.
- 권익위의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의회는 1. 지방의회 회의 방청 절차 개선(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 안내 절차 마련), 2. 회의록 공개 시기 명확화 및 신속 공개(회의록 공개기한을 회의규칙 등에 규정, 홈페이지에 회의록 공개 시점 공지, 회의록의 신속한 공개를 위한 방안 마련), 3. 기초의회 회의 실시간 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 확대(기초의회 회의 중계 및 공개 규정 마련) 개선 대상 기관임.
- 참고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의회에서 회의록 공개 기간을 회의규칙에 명시하고 있는 의회는 서대문구의회가 유일한데, 의회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임시회의록의 경우 회기가 10일 이하 5일, 회기가 30일 이하 10일 이내, 31일 이상 15일 이내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교정이 완료된 회의록의 경우 임시회의록의 두배의 기간 안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회의록 배부 및 공개) ① 교정이 완료되지 않은 임시회의록은 다

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의회 누리집을 통해 우선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한 회기가 10일 이하인 경우는 회기 종료일 후 5일(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
2. 한 회기가 11일 이상 30일 이하인 경우는 회기 종료일 후 10일(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
3. 한 회기가 31일 이상인 경우는 회기 종료일 후 15일(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

② 교정이 완료된 회의록은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이 경우 의원에게 회의록을 배부한 것으로 본다.

1. 한 회기가 10일 이하인 경우는 회기 종료일 후 10일(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
2. 한 회기가 11일 이상 30일 이하인 경우는 회기 종료일 후 20일(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
3. 한 회기가 31일 이상인 경우는 회기 종료일 후 30일(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

(이하 생략)

○ 개정규칙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안 제47조 제7항 신설) 공개할 수 있는 회의록의 경우 폐회된 날로부터 정례회는 30일, 임시회는 20일 기간 안에 강남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회의록 공개 기한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고 여겨짐.
- (안 제47조 제8항 신설) 현재 폐회된 날로부터 1 ~ 2일 뒤에 공개하고 있는 영상회의록으로 임시회의록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 회의록 작성의 효율성 제고에 기대효과가 있다고 판단됨.

다. 종합의견

- 회의규칙의 개정으로 회의록 공개 기한이 정해지고, 임시회의록을 영상회의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의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성 제고,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적극적인 참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윤석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26
----------	-----

발의연월일: 2025. 5. 30.

발 의 자: 윤석민·복진경·이도희·

이동호·이호귀·이성수·

우종혁·황영각·노애자 의원

(이상 9인)

1. 제안이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자 회의록 공개 기한을 규정하여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정례회가 끝난 날부터 30일, 임시회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47조제7항 신설)

나.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영상회의록으로 임시회의록을 대체 함(안 제47조제8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75조(회의의 공개 등)

「지방자치법」 제83조(회의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에 제7항과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공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정례회가 끝난 날부터 30일, 임시회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 ⑧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영상회의록으로 임시회의록을 대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7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 ⑥ (생 략)</p> <p><u><신 설></u></p>	<p>제47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u>공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정례 회가 끝난 날부터 30일, 임시회 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 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 다.</u></p> <p>⑧ <u>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영상회의록으로 임시회 의록을 대체한다.</u></p>